

2027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

□ 개 요

구 분		내 용
지원자격		○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·치·한의사 면허취득자('27년 취득 예정자 포함)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△ 의·치·한학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(졸업예정자 포함) △ 의·치·한학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(졸업예정자 포함) △ 의·치·한학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△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* 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○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○ 장교 임용결격 : 금고 이상의 형, 파산선고자, 복수국적자* 등 * 다만, 복수국적자는 임기제공무원(공중보건 의사) 임용 가능하므로 지원 할 수 있음
접수기간		○ '26. 10. 13.(화) ~ 11. 2.(월) / 21일간
지원 방법	학교 (대학) 재학생	○ 지원자(재학생) → 학교(대학) → 병무청 ○ 학교(대학) : 지원서 접수(병무청 누리집) 문서 및 지원자 명단 제출(전자문서) * 병무청 누리집(www.mma.go.kr) → 병무민원 → 후보생·공보의 등 →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○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: 사전 병무청 시스템 유관기관 등록 필요(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) (붙임 4 참조)
	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	○ 지원자(졸업생) → 병무청 ○ 병무청 누리집(www.mma.go.kr) → 병무민원 → 후보생·공보의 등 →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○ 우편·방문 : 11. 2.(월)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☞ 접수처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, 병무청 현역기획과 의무장교 접수 담당
제출서류		① 의무장교 지원서 ② 신원진술서 ③ 기본증명서(상세), ④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○ 본인 기준으로 발급 ○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신용정보조회서 *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) ○ (경로)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→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
지원서류 제출(우편)		○ 제출기간 : '26. 11. 12.(목)까지 ○ 우편주소 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기획과 의무장교 접수담당

○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

- 의무장교 지원서 : 지원분야 의무에 체크, 의과·치과·한 의과 중 해당 되는 곳에 체크, 서명 날인
- 신원진술서 :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서명 날인
*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
-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반드시 “상세” 증명서 제출
* 본인 기준으로 발급 / “발급용”으로 제출(열람용은 안됨)
- 신용정보조회서 : 발급되는 모든 페이지 제출(기본 2페이지)

□ 접수절차 및 일정

장교편입 지원 (의무자)	대상자 확인 (병무청)	면허취득 확인 (병무청)	선발대상자 통보 (병무청)	장교 선발결정 (국방부)
(지원서 제출) 본인 or 학교의 장 → 병무청장	⇒ 장교임용 결격 여부 등	⇒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조회	⇒ 병무청 → 국방부	⇒ (선발) '27.2월 중 (입영) '27.3월 중
(~ 11. 2.)	(~12. 31.)	(~'27. 2월)	(~'27. 2. 10.)	

- 선발결과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이 공중보건의사의 필요(소요) 인원 (의·치·한 의과 구분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*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선발

- * 「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」 제4조(편입순위) : ①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(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. 다만,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이수 기간 산정에 포함) ②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③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④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다만,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.

※ 공중보건의사 관련 문의 : 병무청 산업지원과(☎ 042-481-2811)

※ 의무장교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 '27. 2. 10.까지 취소신청하여야 함

* 병무청 누리집(www.mmag.go.kr)→병무민원→후보생 공보의 등→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취소

*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'27년 전공의(인턴)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에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직권 취소 처리함